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4. 2. 26.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07호로 2024년 2월 8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주민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지원계획 수립사항을 구체화하고, 교육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한 사항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 수립사항(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등) 신설
- 나. 관계 기관(관내 복지기관 등)과의 협력 조항 신설
- 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2. 9.~ 2. 1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주민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지원계획 수립사항을 구체화하고, 교육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한 사항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 호에 명시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 안 제6조에 지원내용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교육내용에 “올바른 재활용품 수집 등”을 추가하여 재활용품 수거장의 환경정비 및 미관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조항을 추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 검토결과

- 작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폐지 수집 노인 지원 대책’에 따르면 폐지 수집인은 하루 평균 5.4시간, 주 6일간 폐지를 주으면 한 달에 약 159,000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간당 수입이 1,226원으로 최저임금의 13%의 수준임. 또한 폐지수집 활동의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5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인은 약 60명이며, 2023년 우리 구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에서도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비슷한 조사결과가 나타남.

2023년 영등포구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구 분	1위	2위	기타
폐지줍기 목적	경제적 어려움(74%)	다른 할 일이 없어서(21%)	어울러 놀 곳이 없어서(3%), 기타(2%)
활동일수	5일 이상(56%)	3~4일(29%)	1~2일(15%)
활동시간	3~6시간(58%)	6시간 이상(22%)	하루 3시간 미만(19%)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생계를 위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3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